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

2025. 7.



※ 동 지침은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음

차 례 CONTENTS

시범사업 주요 개정 사항	1
I. 시범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시범사업 운영체계	4
II. 시범사업 내용	6
1. 일반적 사항	6
2. 교대제 개선 지원	8
3.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11
4. 시범사업 지원금	14
5. 시범사업 현황 신고	18
III. 시범사업 성과평가	19
1. 평가개요	19
2. 평가지표 세부기준	21
3. 평가자료 제출	28

차 례 CONTENTS

IV. 시범사업 효과 평가 31

V. 시범기관 준수사항 33

[별지 서식] 제1호~18호 36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71

시범사업 주요 개정 사항

구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사업 대상 요건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현행 동일 >																																
	간호 등급		• 3등급 이상		• 상중·중병 1등급 ↑, 병원 3등급 ↑ * 단, 의료취약지, 군지역, 공공의료기관은 - 중병 2등급, 병원 4등급까지 참여 가능																																
	간호사 수		• 병동 당 9명 이상		• 일반병동 20명 이상																																
교대제 개선 지원	운영		• 병동단위 운영(최소 2개 병동 참여)		• 기관단위 운영(일반병동 전체)																																
	소속		• 병동 소속		• 별도의 대체간호사팀 소속																																
	인력 배치 기준	대체	• 2개 참여병동 당 1인		• 운영병상 수에 따른 대체 및 지원 간호사 수 - 지원인력(대체+지원)은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10% 상한* 적용하여 지원 * 소수점 이하 절사																																
		추가	• 1개 참여병동 당 1인																																		
	야간 전담	• 병동 당 10% 이상																																			
대체 간호사 경력기준		• 상급종합병원: 5년 이상 • 종합병원, 병원:3년 이상		• 상급종합병원 5년 이상 or 소속병원 3년 이상 • 종합병원·병원 3년 이상 or 소속병원 2년 이상 * 완화된 경력(소속병원 경력 상중 3년, 중병이하 2년 이상)은 지원금 감산(상중 10%, 중병이하 5%) ** 타병원 경력은 상중, 중병, 병원만 인정																																	
근로시간		• <신설>		• (근로시간) 주40시간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배치기준		• 교육전담 및 현장교육 간호사 수		• 교육총괄 및 현장교육 간호사 수 - 100병상 미만 병상 구간 신설																																
			<table><tr><th rowspan="2">허가병상 수</th><th colspan="2">교육전담간호사 수</th></tr><tr><th>교육전담</th><th>현장교육</th></tr><tr><td>~ 300 병상 미만</td><td rowspan="4">1</td><td>1</td></tr><tr><td>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td><td>3</td></tr><tr><td>500병상 이상~700병상 미만</td><td>5</td></tr><tr><td>700병상 이상 ~</td><td>8</td></tr></table>		허가병상 수	교육전담간호사 수		교육전담	현장교육	~ 300 병상 미만	1	1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3	500병상 이상~700병상 미만	5	700병상 이상 ~	8	<table><tr><th rowspan="2">병상 수*</th><th colspan="2">교육전담간호사 수</th></tr><tr><th>교육총괄</th><th>현장교육</th></tr><tr><td>~ 100 병상 미만</td><td rowspan="5">1</td><td>-</td></tr><tr><td>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td><td>1</td></tr><tr><td>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td><td>3</td></tr><tr><td>500병상 이상~700병상 미만</td><td>5</td></tr><tr><td>700병상 이상 ~</td><td>8</td></tr></table>			병상 수*	교육전담간호사 수		교육총괄	현장교육	~ 100 병상 미만	1	-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1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3	500병상 이상~700병상 미만	5	700병상 이상 ~	8
			허가병상 수	교육전담간호사 수																																	
교육전담	현장교육																																				
~ 300 병상 미만	1	1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3																																			
500병상 이상~700병상 미만		5																																			
700병상 이상 ~		8																																			
병상 수*	교육전담간호사 수																																				
	교육총괄	현장교육																																			
~ 100 병상 미만	1	-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1																																			
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3																																			
500병상 이상~700병상 미만		5																																			
700병상 이상 ~		8																																			
				* 병상 수 = 허가병상 수 - (① + ②) ①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②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참여병동 수																																	

* 병상 수 = 허가병상 수 - (① + ②)

①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②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참여병동 수

구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경력기준	• 3년 이상					• 3년 이상 * 타병원 경력은 상종, 중병, 병원만 인정				
	근로시간	• <신설>					• (근로시간) 주40시간				
지원금		• 연간 지원금					• 대체간호사 연간 지원금 인상				
		구분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	구분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
		상종	대체	3,977만원	전담	3,977만원	상종	대체	4,096만원	총괄	3,977만원
			추가	3,181만원	현장			지원	3,181만원	현장	
		중병, 병원	대체	4,545만원	전담	4,545만원	중병, 병원	대체	4,681만원	총괄	4,545만원
추가	3,636만원		현장	지원	3,636만원			현장			
• <신설>					• 지역가산 - 의료취약지, 군지역 중병이하 기관 10% * 간호등급 충족기관에 한함(중병 1등급↑, 병원3등급↑)						
성과 평가	운영 방법	• 5개 성과지표와 2개 모니터링 지표 • 지원금 지급률 연계					• 3개 성과지표와 4개 모니터링 지표 (성과지표의 등급 구간 미정) • 지원금 지급률 연계				
	성과 지표	• 교대근무 질 확보율 •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 (입사2년)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 • (3년) 경력간호사 전년대비 보유율					• 결원 대체율 ^{신설} • 계획 근무 준수율 • (입사2년)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				
	모니 터링 지표	• 3교대제 운영 비율 • 근무환경 모니터링					• 3교대제 운영 비율 • 교육 운영 성과 * 교육간호사 1인당 신규간호사 수 ^{신설} 신규간호사 1인당 교육시간 ^{신설} , 교육운영 적정성 • (3년) 경력간호사 보유율 • 환자 안전 성과(낙상, 욕창, 투약오류) ^{신설}				
한시적 유예 적용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 대상> • (간호등급 기준 유예) 간호등급 미충족 기관 '26.9.30.(26.3분기)까지 1년 유예 • (대체간호사팀 운영 유예) '25.12.31.까지 1차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가능 - 단, '26년부터 팀제로 전환해야하며, 미전환 또는 중도철회 시 '25년 지원금 미지급 - '25.9.~12. 지원금 성과평가 차등 지급 시 지급률 100% 상한 적용 <2차 시범기관 전체 대상> • (일반병동 전체 참여 유예) '26.6.30.까지 일반병동 병상 50%이상 시 참여 가능									

I. 시범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간호사의 교대근무는 간호서비스 특성 상(24시간 연중무휴) 필요하나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의 어려움으로 이직률이 높고 증가 추세
 - 열악한 근무환경은 이직률을 높이고 이는 신규간호사 증가와 경력 간호사의 업무량 증가로 다시 이직률이 증가하는 악순환
- ※ 간호사 이직률 15.2% vs 전체 산업 평균 이직률 4.9%(‘19년 고용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 보건의료노조와의 노정합의(‘21.9.) 및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23.4.)에 따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교대제 개선 지원 인력과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22.4.~’25.8.)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부 병동에 한정되었던 사업범위를 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여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25.9.)

나. 사업목적

- 결원대체 인력 운영으로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 정착
-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제고
-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로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다.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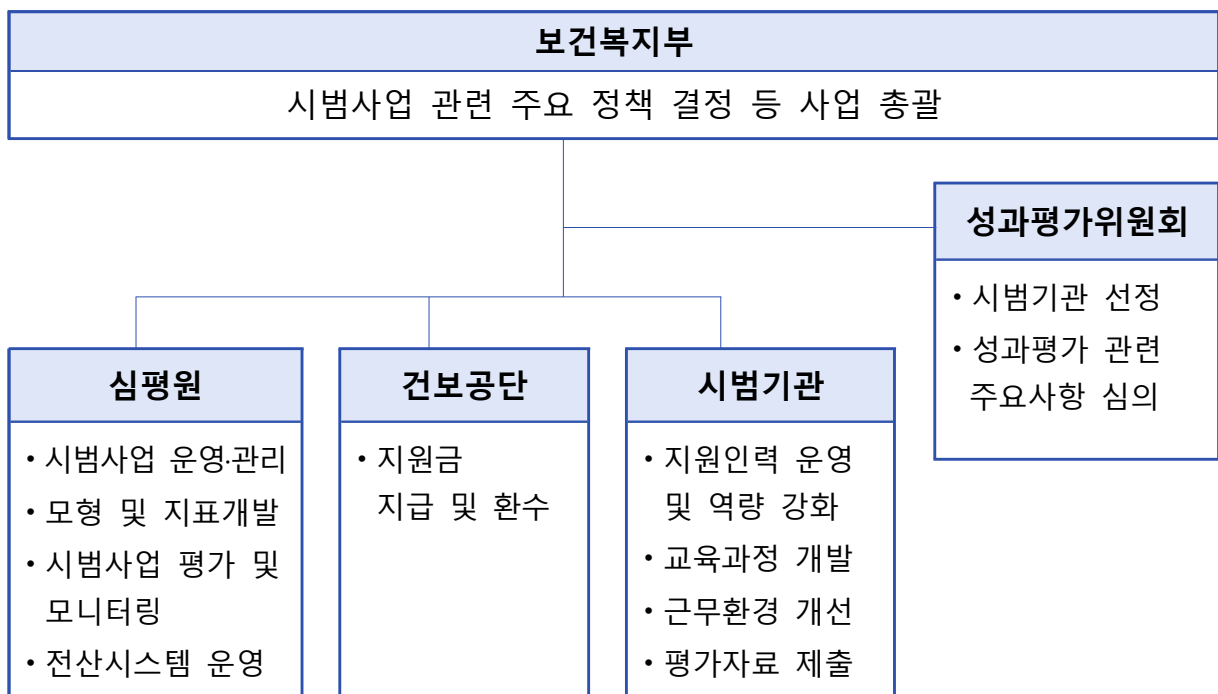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보건의료 시범사업)

2 시범사업 운영체계

가. 수행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제출자료 서식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성과평가위원회) 시범기관 선정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급화 등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관련 주요사항 심의
- (시범기관) 지원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발·운영, 평가 관련 자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시범기관에 지원금 지급 및 중복지원 등에 의한 지원금 환수

<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



나. 시범사업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공급자, 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등 10명
 - * 시범사업 이해관계자는(시범기관 소속 인력 등) 위원에서 제외
- (역할) 시범기관 선정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급화 등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관련 주요 사항 심의
- (운영) 시범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 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구 분	인원	소속기관
공급자	2인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각 1인
전문가	5인	(평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 1인, 심평원 평가위원 1인
		(간호) 대한간호협회 추천 전문가 2인
		(보건의료) 정부 및 유관기관 추천전문가 1인
정부	1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유관기관	2인	심평원 공공수가정책실장,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다. 시범사업 추진 절차

단 계	사업 절차	주관 기관
시범기관 공모	•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심평원
시범기관 선정	• 시범기관 선정평가	성과평가위원회
	• 시범기관 선정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심평원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수행 및 자료 제출	시범기관
성과평가	• 지표별 평가결과 산출	심평원
	• 평가 및 지원금 지급 수준 결정	성과평가위원회
지원금 지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건보공단
모니터링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심평원

II. 시범사업 내용

1 일반적 사항

가. 사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간호등급)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 의료취약지¹⁾ 및 군(郡)지역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²⁾은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 (인력운영) 일반병동 간호사 수 20명 이상

* 차등제 신고 산정인원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은 '26. 9. 30. 까지 간호등급 요건 유예

나. 사업모형

- (사업구성) ①교대제 개선 지원 및 ②교육전담간호사 지원
 - 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간호사 지원
 - ②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 70%, 종합병원 이하 80% 지원(참여기관 20~30% 부담)

- (지원금 지급)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 시범사업 모형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사업 구분	교대제 개선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지원 내용	대체간호사팀 운영 지원	교육전담부서(팀) 운영 지원
	대체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지원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인력 지원
성과평가 (반기별)	성과지표	1. 결원 대체율, 2. 계획 근무 준수율, 3.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
	모니터링 지표	1. 3교대제 운영 비율, 2. 교육 운영 성과, 3. 환자 안전 성과, 4. 경력간호사 보유율
지원금 지급	반기별 평가 결과 반영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다. 사업기간

- 2025. 9. 1. ~ 2027. 12. 31.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시범기관 선정

- (참여공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시범기관 선정
* 1차 시범기관도 2차 시범사업 신청 필요
- (제출자료) 참여신청서, 계획서, 이행약정서*, 시행 합의서(선택)**
*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3호]
** 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과정에서 우대 [별지 제4호]
- (선정방법) 내부 검토 및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 기준 충족 여부 및 교대제 개선 참여 병상 수,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우선으로 하되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평가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교대제 개선 지원

가. 운영 방안

- 시범기관은 별도의 대체간호사팀을 구성하고 긴급결원 발생 시 대체근무를 수행하는 대체간호사를 배치하여, 일반병동 간호사의 근무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운영
- 예측가능한 근무를 위해 일반병동 간호사의 근무표는 2개월 단위로 계획·운영

< 대체간호사팀 운영체계 모식도 >



나. 참여 대상 병동

-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된 일반병동 전체
 - ※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 한시적 예외 적용('26. 6. 30. 까지)
 - 대체간호사 팀제 전환에 따른 현장 적응 등을 고려하여 일반병동 운영병상의 50%이상 참여 시 시범사업 참여 가능
 - * 단, 참여병동 간호사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함
 - 사업 중 참여병동 추가 및 변경은 불가하나, '26. 1. 1.부터 적용하는 병동에 한해 변경·추가 신청 가능('25.12월 별도 안내 예정)

다. 인력 배치 기준

- 차등제에 신고된 **일반병동 운영 병상 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 분기 첫째 달 1일부터** 지원 인원수 적용(정신과 폐쇄, 간호·간병통합병동 제외)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자 운영병상 수 기준이며, '25.9월~12월은 '25.3분기 차등제 기준(6월15일) 운영병상 수로 적용하여 '25.12월까지 운영

- ※ (예시) '26.3분기('26.6.15.) 병상 수가 750병상일 경우, '26.7.1.부터 대체간호사 9명 운영 필요
- 단, 지원 인원수는 참여병동 간호사수의 10%(소수점 이하 절사) 상한 적용, 상한 적용 시 대체간호사를 우선 배치 <질의응답 Q3-9.참고>

< 대체간호사·지원간호사 배치 기준 >

일반병동 운영병상 수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 100병상 미만	2	1
100병상 이상 ~ 200병상 미만	3	
200병상 이상 ~ 400병상 미만	4	
400병상 이상 ~ 600병상 미만	7	2
600병상 이상 ~ 800병상 미만	9	
800병상 이상 ~ 1,000병상 미만	11	3
1,000병상 이상 ~ 1,200병상 미만	13	
1,200병상 이상 ~ 1,400병상 미만	15	
1,400병상 이상 ~ 1,600병상 미만	17	
1,600병상 이상	19	

○ 세부 인력 기준

구분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인력배치	• 대체간호사팀 소속으로 현황 신고 및 운영(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불가)	
근로시간	• 주 40시간 (단,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원 가능)	
근무제	• 자율 운영 (결원 발생 시 적시에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대체간호사 간 교대근무 권고)	• 자율 운영
역할	• 긴급 결원(결근, 경조사 등) 발생 시, 결원자의 근무 대체 • 결원 미발생 시 참여병동 내 환자간호 업무	• 대체간호사팀 지원 업무 (결원 현황 취합, 시범사업 자료 제출, 기타 팀 관련 행정업무 등) • 필요시 참여병동 지원 업무
임상 경력	• (상급종합) 5년 이상 또는 소속병원 3년 이상 • (중병,병원) 3년 이상 또는 소속병원 2년 이상 * 타병원 경력은 상급종합, 중병, 병원만 인정 (한방·요양·치과·정신병원, 의원급 불인정) ** <u>기준경력 완화인력(소속병원 2년 이상(상급종합 3년))은 지원금 감산(5~10%)</u>	• 경력기준 없음

라. 인력 준수사항

- 배치인력(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은 간호등급 인력 산정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등 유사 지원사업과 인력 중복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치인력의 퇴사나 이동,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 시 15일 이내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 16일 이상 연속 부재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지급기간 및 지급률 차감 등)
- 참여병동 이외 병동에서 대체근무 및 병동지원 업무 불가

마. 대체간호사 팀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은 '25. 12. 31. 까지 '1차 시범사업'의 인력 지원 및 운영방법(병동 소속 배치)으로 참여 가능
 - 단, '25년 지원금 성과평가 차등지급 시 지급률 100% 상한 적용
-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 계획서에 팀제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1차 시범사업 참여병동 수 이상으로 병동 추가 불가
 - ※ 팀제 전환 계획 제출 하였으나 '26년부터 팀 운영을 못하거나 중도 철회할 경우 '25년 **9~12월 운영에 대한 지원금 미지급**

바.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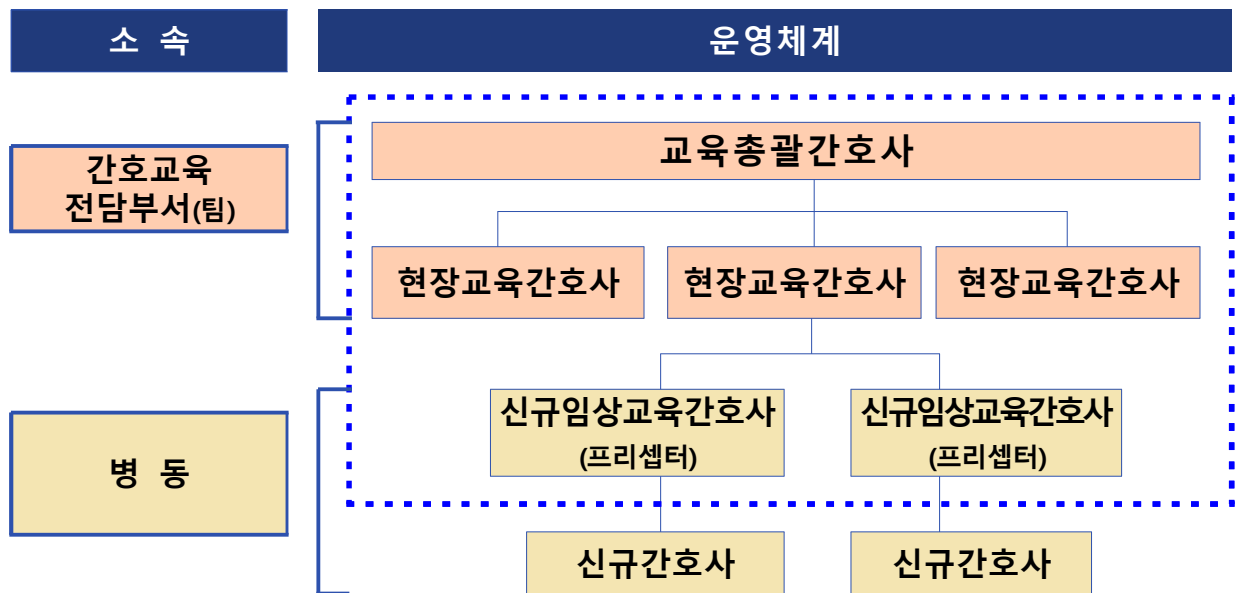
- 시범기관은 원활한 사업수행 및 적정수의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결원발생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함
- 대체근무 배치 시 대체간호사의 근무역량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관은 간호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병동지원업무 수행 시 근무경험 없는 병동 일정기간 배치, 온·오프라인 교육 등
- 대체간호사 선발 및 근무기간은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함
- 대체간호사는 일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하여 기관별 자율 서식 사용 가능

3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가. 운영 방안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필수적으로 설치한 간호교육전담부서(팀)에 간호 교육 업무만 전담·수행하는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하여 신규간호사의 임상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운영

< 간호교육 운영체계 모식도 >



나. 교육전담간호사 활동 범위

- 일반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 등 기관단위 전체 교육 가능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병동은 교육 불가
-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병동 간 재배치된 간호사, 휴직 후 복직한 간호사, 기존 경력간호사 등 교육이 필요한 대상 교육 가능

다. 인력 배치 기준

- 전분기 마지막월 말일 병상 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기 첫째 달 1일부터 지원 인원수 적용

* '25.9월~12월은 '25.6.30. 기준 병상 수로 적용하여 '25.12월까지 운영

- 병상 수 산정 기준

$$\text{병상 수} = \text{허가병상 수} - (\text{①} + \text{②})$$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병상 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참여 여부와 무관

- ②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기관 중 필수의료병동(중환자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병동의 병상 수*

* 중환자실은 허가 병상 수, 집중치료실은 운영 병상 수 기준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

병상 수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 100병상 미만	1 인	-
100병상 이상 ~ 300병상 미만		1 인
300병상 이상 ~ 500병상 미만		3 인
500병상 이상 ~ 700병상 미만		5 인
700병상 이상 ~		8 인

- 세부 인력 기준

구분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인력배치	• 간호교육전담부서(팀)으로 현황신고 및 운영(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불가)	
근로시간	• 주 40시간 (단,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원 가능)	
역할	- 간호사(신규간호사 포함) 대상 교육 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의 총괄 - 교육대상 및 병동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개발·관리 - 현장교육간호사와 프리셉터에 대한 교육 총괄 및 고충 관리	- 프리셉터 지도 및 관리 - 프리셉터 교육 및 평가, 고충 관리 - 신규간호사 임상교육 총괄 및 관리 -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임상 개별 실무교육 시행 - 프리셉터십 전후 임상수행능력 평가 - 신규간호사 고충 파악 및 관리 - 병동 재배치, 복직 간호사 교육 지원
자격사항	3년 이상(타병원 경력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만 인정) - 최근 2년 이내 대한간호협회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기본과정) 이수	

라. 인력 준수사항

- 배치인력(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은 간호등급 인력 산정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등 유사 지원사업과 인력 중복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치인력의 퇴사나 이동,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 시 15일 이내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16일 이상 연속 부재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지급기간 및 지급률 차감 등)
단, 부재기간이 16일~30일 이내인 경우 지급률 차감 없이 부재기간만 지원금 미지급

마.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관 특성에 맞춰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규간호사에게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지도록 운영하여야 함

< 역량기반 교육과정 내용(참고) >

핵심역량	항 목	
환자간호	• 활력징후 및 신체사정 • 환자관리: 입·퇴원환자간호 • 호흡간호: 산소요법, 흡인 등 • 영양관리: 위관영양 등 • 배설간호/배뇨간호 • 상처관리 • 수술/시술/처치 전후 간호 • 검사전후 간호 • 투약간호/정맥주사간호 • 항암화학요법 간호	• 수혈간호 • 통증간호 • 감염관리간호 • 의료기기 교육 • 심폐소생술 • 환자체험 • 환자가족교육 • 의무기록 • 환자질환별 교육
의사소통과 협력	• 인수인계교육(SBAR활용) •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	• 심리지원 및 임파워먼트 • 타부서/타직종 간 협력
환자안전과 질 향상	• 환자안전: 낙상/욕창/투약안전/신체보호대 사용/자살, 자해 예방 • 시설안전(소방 및 재난관리)	• QI활동 •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 • 감염감시체계
의료정보 활용	• 정보보안 • 의무기록 관리	•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용 (OCS, EMR, 의료학술 정보 등)
전문성과 리더십	• 간호전문직과 윤리 • 간호사 의무와 책임	• 스트레스 관리 • 셀프리더십(시간관리, 자기조절)

*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대한간호협회, 2019

4 시범사업 지원금

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구분	교대제 개선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상급종합병원	대체간호사	4,096만원	교육총괄간호사	3,977만원
	지원간호사	3,181만원	현장교육간호사	
종합병원·병원	대체간호사	4,681만원	교육총괄간호사	4,545만원
	지원간호사	3,636만원	현장교육간호사	

나. 가감산

○ (지역가산) 종합병원 이하 의료취약지*·군지역 의료기관 10% 가산

- 단, 간호등급 기준충족(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기관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 (경력감산) 대체간호사 경력기준 완화적용 인력 5~10% 감산

- 반기 시작 월 1일(1.1., 7.1.) 기준으로 경력 요건 산정, 인력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반기 중간에 배치된 경우 첫 배치일자 기준 적용
<질의응답 Q4-8.참고>

※ 단, '25년은 2차 시범사업 시작일(9.1.) 기준 적용

구분	경력* 감산 대상	감산율
상급종합병원	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10%
종합병원, 병원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5%

* 타병원 경력 없이 소속병원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적용방법) 가감산은 합산하여 지급률 적용

다. 성과평가에 의한 차등

○ 평가등급 구간 및 지급률은 'Ⅲ. 시범사업 성과평가' 참조

라. 최종 지원금 산출

- ①대체간호사 경력 완화 감산과 ②취약지·군지역 가산을 합산한 지원금에 ③성과평가에 따른 최종 등급에 따른 지급률 적용

$$\text{최종지원금} = \{ \text{평가기간에 따른 지원금} \times (100\% + \text{①} + \text{②}) \} \times \text{③}$$

※ 가감산 적용 예시

구분	①지역가산	②경력감산	가감산 계 (①+②)
취약지 소재 종합병원(간호등급 2등급) 경력 2년의 대체간호사	미적용	-5%	-5%
군지역 소재 종합병원(간호등급 1등급) 경력 2년의 대체간호사	+10%	-5%	+5%
취약지 소재 병원(간호등급 2등급) 경력 3년의 대체간호사	+10%	미적용	+10%
군지역 소재 병원(간호등급 4등급) 경력 3년의 대체간호사	미적용	미적용	-

마. 지원금 지급 제한

- ‘인력 배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인력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시범기관은 인력별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금 차감 수준 등 결정

* 필요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또는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음

* 평가대상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되므로 사전에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함

바.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기

- 시범기관 제출자료로 시범사업 운영성과 및 준수사항 등을 반기별로 확인 후 지급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9~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차 (25)	자료 제출	평가 시행	지급										
2년차 (26)		자료 제출	평가 시행	지급									
				자료 제출	평가 시행	지급							
3년차 (27)						자료 제출	평가 시행	지급					
								자료 제출	평가 시행	지급			

※ 평가 및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절차

- ① 시범기관은 심평원에 인력현황 신고 및 평가자료 제출
- ② 심평원은 제출자료 검토 및 성과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로 각 시범기관에 지급할 지원금액 산출
- ③ 심평원은 시범기관에게 지원금액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 지원금액 통보: 공문 및 지원금 결과통보서 우편발송
 - ** 이의신청: 시범기관은 지원금액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우편 발송
- ④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되고, 결정된 최종 지원금액은 심평원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송부됨
- ⑤ 보건복지부는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 후 심평원에 승인 통보
- ⑥ 심평원은 시범기관과 건보공단에 최종 지원금액 통보
- ⑦ 건보공단은 최종 지원금액을 시범기관에 지급

<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절차 >



사.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 2차 시범사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5. 7~8월은 인력배치 및 자료제출 기준 준수 시 차등 없이 지원금 지급

5 시범사업 현황 신고

가. 현황 신고

구분	시범사업 참여병동 간호인력	시범사업 지원인력
대상	시범사업 참여병동 간호인력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시기	평가자료 제출기한 이내	
내용	시범기관의 간호인력 신고	지원 인력 관련 병동 현황 및 간호인력 신고
자료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erb.or.kr/)	
	간호인력 현황 신고	현황신고방법 세부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병동 및 인력 현황 신고 경로

- ① (병동 현황)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 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 신고
- ② (인력 현황)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 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현황 신고

나. 기타

- 시범기관은 매분기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III. 시범사업 성과 평가

1 평가개요

가. 운영 방안

- (평가주기) 시범사업기간 중 반기별 운영성과 평가
 - * '25년은 4개월(9~12월)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 (평가지표) 총 7개 지표(성과지표 3개, 모니터링 지표 4개)

구 분	평가지표(가중치)	평가내용
성과지표	1. 결원 대체율(30)	• 참여병동 결원발생에 대한 대체근무 비율
	2. 계획 근무 준수율(30)	• 참여병동 간호사의 근무가 계획대로 실제 운영된 비율
	3.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40)	•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이직률의 전년 대비 차이
모니터링 지표	4. 3교대제 운영 비율	• 참여병동의 3교대제 근무 간호사 비율
	5. 교육 운영 성과	•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신규간호사 수 • 신규간호사 1인당 교육시간 •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 환류 등 교육운영 적정성(비계량)
	6. 경력간호사 보유율	•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보유율
	7. 환자 안전 성과	• 참여병동의 낙상·욕창·투약오류 발생건수

※ 모니터링 지표는 결과만 산출하며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평가방법) 시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산출한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text{종합점수} = \frac{\sum \{ (\text{평가지표별 점수}) \times \text{지표별 가중치} \}}{\text{가중치의 합}} \times 100$$

- 평가지표별 표준화 점수 산출방법 등 세부기준은 성과평가위원회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

나. 평가등급

- 성과평가에 따라 산출된 기관별 종합점수에 의해 등급이 나뉨
-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최종등급 산출 및 지급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등급 산출 세부기준(평가등급 구간 및 지급률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 논의 후 결정, 추후 안내 예정

다. 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결과 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시범기관은 반기별 모니터링으로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유지 여부가 결정됨

2 평가지표 세부기준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고지 예정

지표 1	[성과] 결원 대체율
정의	○ 긴급 결원발생에 대한 대체간호사의 대체근무 비율
산출식	$\text{결원 대체율} = \frac{\text{해당 월 대체근무 일수의 합}}{\text{해당 월 참여병동의 결원발생 일수의 합}} \times 100$ ※ 월별 산출 후 평균 적용(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기준	○ 결원발생 일수 - [별지 제 9호 서식]에 작성된 시범사업 참여병동에서의 긴급 결원(병가, 조사, 사직, 휴직, 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일수 ※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기 제출된 근무표(계획 및 실제) 및 신뢰도 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예정 ○ 대체근무 일수 - [별지 제 9호 서식]에 작성된 결원 발생에 대해 대체간호사가 수행한 대체근무일수의 합 - 대체간호사팀 또는 참여병동(교대제개선)에 소속된 인력 중 지원인원 수를 초과하여 배치된 대체간호사*의 대체근무일수 포함 * 인력기준 충족간호사에 한하며, 반드시 인력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지표 2	[성과] 계획 근무 준수율
정의	○ 참여병동 간호사의 근무가 계획대로 실제 운영된 비율
산출식	$\text{계획 근무 준수율} = \frac{\text{참여병동 간호사의 변동되지 않은 월 근무일수 합} + \text{월 대체근무 일수 합}}{\text{참여병동 간호사의 월 근무 일수 합}} \times 100$ ※ 월별 산출 후 평균 적용(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기준	○ 참여병동 간호사 - 평가 대상기간동안 참여병동에서 근무 중인 모든 간호사 (수간호사, 대체·지원간호사 제외) ※ (참고) 대체·지원간호사는 계획 근무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배치 및 근무현황 확인을 위해 실제 근무표 제출 필요 ○ 월 근무일수 - 해당 월 1~말일까지의 일수 예) 5월 한달 근무일수는 31일에 해당 ○ 변동되지 않은 월 근무일수 - 근무계획표와 실제 근무표를 비교하여 일치한 근무 일수 -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인한 근무 변동(대체간호사가 대체한 일수 제외) ○ 대체근무일수 - [별지 제 9호 서식]에 작성된 결원 발생에 대해 대체간호사가 수행한 대체근무일수의 합 ○ 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 2개월 단위 계획 근무표 및 실제 근무표 필수 제출

지표 3 [성과]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

정의	○ 평가대상기간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과 전년도 동일기간의 이직률 차이
산출식	○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감소율) = 평가대상기간 신규간호사 이직률 - 전년도 동일 기간 신규간호사 이직률 $\text{신규간호사 이직률} = \frac{\text{신규간호사 중 퇴사자 수}}{\text{신규간호사 수}} \times 100$ ※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기준	○ 신규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동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해당기관 입사 730일 이하인 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현황으로 산정한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시점 예시) 평가대상기간이 '26년 1~6월인 경우 '26년 2,3분기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시점 ('25년 12월 15일 ~ '26년 6월 14일)으로 적용 ※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월 14일 기준으로 신규간호사 대상 여부 확인 (입.퇴사일자로 산출)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제외 ○ 신규간호사 중 퇴사자 - 평가대상기간 동안 해당기관에서 퇴사한 신규간호사

지표 4 (모니터링) 3교대제 운영 비율

정의	○ 다양한 근무제도의 활용 정도																
산출식	3교대제 운영비율 = 참여병동 3교대제 근무 간호사 수 /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 수 × 100 ※ 월별 산출 후 평균 적용(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기준	○ 전체 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동안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수간호사, 대체, 지원간호사 제외) ○ 3교대제 근무 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 중 3교대제 근무 간호사(수간호사, 대체, 지원간호사 제외) ○ 3교대제 - 1일 8시간, 고정 근무 없이 교대 근무 ○ 3교대제 이외 근무제 <table><tr><th>구 분</th><th>주요 패턴 근무제</th><th colspan="2">기타 근무제</th></tr><tr><td>1개 근무 고정</td><td>· 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 시간 대(낮 근무, 저녁 근무) 1개만 고정 근무</td><td>야간전담 근무제</td><td>· 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 근무</td></tr><tr><td>2개 근무 고정</td><td>· 1일 8시간,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하여 고정 근무 ex) 낮 근무(월,화,수) - 저녁 근무(목,금)</td><td>대체 근무제</td><td>· 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td></tr><tr><td></td><td></td><td>휴일전담 근무제</td><td>· 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td></tr></table> * 시범기관이 자체적으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 외 근무제(2교대제, 시간 선택형 근무제 등)를 제시하는 경우 운영 가능	구 분	주요 패턴 근무제	기타 근무제		1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 시간 대(낮 근무, 저녁 근무) 1개만 고정 근무	야간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 근무	2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하여 고정 근무 ex) 낮 근무(월,화,수) - 저녁 근무(목,금)	대체 근무제	· 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휴일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구 분	주요 패턴 근무제	기타 근무제														
	1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 시간 대(낮 근무, 저녁 근무) 1개만 고정 근무	야간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 근무													
	2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하여 고정 근무 ex) 낮 근무(월,화,수) - 저녁 근무(목,금)	대체 근무제	· 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휴일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지표 5 (모니터링) 교육 운영 성과

정의	○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운영항목별 이행 여부 및 신규간호사 교육의 양적 수준, 교육간호사의 업무량 등 확인	
산출식	구분	산출식
	①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신규간호사 수	$\frac{\text{신규간호사 수}}{\text{교육전담간호사 수}} \times 100$
	② 신규간호사 1인당 교육시간	$\frac{\text{신규간호사가 교육받은 시간의 합}}{\text{신규간호사 수}} \times 100$
	③ 교육운영 적절성	· 교육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 수행, 평가 및 환류 여부
세부 기준	○ 신규간호사 수	
	-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육일지에 등록된 교육시행일 기준 입사 1년 이내 신규간호사 수 - 일반병동, 중환자실 등 기관 전체 신규간호사 (단, 간호·간병 등 교육대상 범위가 아닌 신규간호사는 제외)	
	○ 교육전담간호사 수	
	- 산출식 $\text{교육전담 간호사 수} = \frac{\text{평가대상기간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전담부서에서의 재직일수 (16일 이상의 연속부재 제외)의 합}}{\text{평가대상기간 일수}}$ *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평가대상기간: '26.1.1.~6.30. 재직기간: A 교육총괄간호사('26.1.1.~ 6.1.), B 교육총괄간호사('26.6.25.~ 6.30.) C 현장교육간호사('26.1.1.~ 6.30.) $1.9인 = \frac{152(A간호사 재직기간) + 6(B간호사 재직기간) + 181(C간호사 재직기간)}{181(\text{평가대상기간('26.1.1.~6.30.) 일수})}$	
	○ 교육시간	
	-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육일지에 기록된 신규간호사 대상 교육시간의 합 ※ 집합교육, 현장교육 등 교육방법에 대한 구분 없음	
	○ 교육운영 적절성 평가항목	
	- 연간·분기별 교육 및 평가계획 수립 -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수행 -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수행 - 평가결과 조직 내 반영	

지표 6	[모니터링] 경력간호사 보유율
정의	○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보유율
산출식	$\text{경력간호사 보유율} = \frac{\text{경력간호사 재직일수의 합}}{\text{전체 간호사 재직일수의 합}} \times 100$ ※ 분기별로 산출후 평균 적용(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기준	○ 전체 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동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제외 * 평가대상기간 현황으로 산정한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시점 예시) 평가대상기간이 '26년 1~6월인 경우 '26년 2,3분기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시점 ('25년 12월 15일 ~ '26년 6월 14일)으로 적용 ○ 경력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동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병원 재직일이 1,095일 이상인 간호사 * 평가대상기간 동안 매분기 마지막월 14일 기준으로 경력간호사 대상 여부 확인(입·퇴사일자로 산출) ○ 재직일수 -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제 재직일수의 합

지표 7	[모니터링] 환자 안전 성과
정의	○ 시범사업 참여병동에서 발생한 낙상·투약오류 발생건수
산출식	○ 없음
세부 기준	○ 낙상 - 평가대상기간 참여병동 낙상 발생 건수 ※ 병동 내에서 발생한 낙상 건수만 산출(외래, 검사실 등 제외) ○ 투약오류 - 평가대상기간 참여병동에서 발생한 투약오류 발생 건수 ○ 욕창 - 평가대상기간 참여병동에서 신규 발생 욕창건수 ※ 시범기관에서 정한 보고 기준에 따른 발생건수 입력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기준 적용)

3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자료

- 시범기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각 지원사업에 따라 해당 제출자료 및 기한을 확인하여 관련 서식(웹) 및 별도 증빙자료 첨부

< 평가종류 별 제출자료 >

구분	제출자료 및 참고서식		제출처	제출기한
1. 성과 평가 및 인력배치 증빙자료				
교대제 개선 지원	• 근무 시프트 종류 수정사항	별지 제 6호	시범사업 담당자 메일 (hiranurse@ hira.or.kr)	근무 시프트 종류 추가사항 발생 시 * 최초 신청은 [별지 2-1호 서식] 계획서 제출 시 작성한 근무 시프트 운영현황 으로 같음
	• 계획 근무표 제출 전 인력 현황 신고 변경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짜수달 25일까지 변경 신고 완료 예) 10월 25일까지 신고된 인력 기준으로 '25년 11,12월 계획 근무표 제출 (단, '25년 9,10월의 경우 '25년 9월 1일까지 가능)
	• 참여병동의 계획 근무표	별지 제 7호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짜수달 26~말일 예) '25년 11,12월 계획 근무표 제출기간은 10월 26~31일 (단, '25년 9,10월 계획근무표의 제출기간은 '25년 9월 1~10일)
	• 실제 근무표 제출 전 인력 현황 신고 변경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근무 월 익월 5일까지 변경 신고 완료 예) 9월 실제근무표의 제출 전 인력신고 변경은 10월 5일까지
	• 참여병동의 실제근무표	별지 제 8호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근무 월 익월 11일~15일 예) 9월 실제근무표는 10월 11일~15일까지 제출
	• 결원 발생 및 대체근무 현황 • 근무 변동 현황(임신)	별지 제 9호 별지 제 10호		

구분	제출자료 및 참고서식		제출처	제출기한
	• 대체간호사 경력증명서(필요시)	별도 증빙	상동	상동
	• 신뢰도 점검 - 간호사 근무 확인 자료(간호 기록지, 투약기록지 등) - 인력배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대체간호사 근무일지	별도 증빙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별도 요청 시 (요청일 이후 10일 이내)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 인력 현황신고 변경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근무 월 익월 5일까지 변경 신고 완료 예) 9월 근무 인력신고 변경은 10월 5일까지
	• 교육전담부서 구성현황	별지 제 12호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근무 월 익월 11일~15일 예) 9월 배치 인력 현황 자료는 10월 11일~15일 까지 제출
	•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필요시)	별도 증빙		
2. 그 외 평가 지표				
교육 운영 성과	• 연간·분기별 교육프로그램 시행 계획서(파일첨부)	별지 제 13호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매분기 익월 1일~10일 예) 3분기 자료는 10월 1일~10일까지 제출 (단, '25년 9~12월 교육 운영 성과 자료의 제출기간은 '26년 1월 1~10일)
	• 교육평가 계획서(파일첨부)			
	• 교육평가결과서(파일첨부)			
	• 교육일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입력)	별지 제 13호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u>자료 수시 입력 가능</u>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단, '25년 9~12월은 '26년 1월 10일까지 제출)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 경력간호사 보유율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기준*에 따른 제출기한 준수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환자 안전 성과	• 환자 안전사고 발생현황	별지 제11호	시범사업자료 제출시스템	익월 1일~10일 예) 9월 환자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는 10월 11일~15일 까지 제출

* 자료제출 방법(시범사업 정보 시스템) 및 서식 작성요령 추후 안내 예정

** 지표에 따라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제출

나. 자료제출 방법

-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하여 제출

다. 자료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인력 현황 신고 및 제출 자료의 허위·누락 또는 자료 요청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 예정이며,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시범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인력 현황 신고 및 제출 자료는 제출 기간 내 완료된 자료만 활용 가능하므로 제출기한을 꼭 준수하여야 함
- ※ 평가결과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은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정부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IV. 시범사업 효과 평가

가.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연구용역 위탁 등을 통해 진행

나. 평가내용

- 시범사업 모형의 타당성, 효과, 제도 확장성 등 다각적으로 분석

다.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현황신고 및 시범기관의 제출자료, 간호사 및 환자 대상의 설문조사 등
 - 청구자료: 참여병동 입원환자 재원일수 등(라 시범사업 관련 명세서 작성 참고)
 - 현황신고 및 시범기관 제출자료: 시범기관에서 제출한 인력배치, 참여병동 및 비 참여병동(대조군)의 근무표 등
 - 인터뷰 및 설문조사: 참여병동 간호사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한 개별 설문(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등) 및 인터뷰 수행, 환자 대상 입원 서비스 만족도 등
- 이 외 시범사업 효과 평가와 관련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장 방문 가능성도 있음

* 시범기관은 평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라. 시범사업 관련 명세서 작성

- 본 시범사업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병동 단위의 참여이므로 효과 분석을 위해 참여병동과 비 참여병동에서의 환자구분 필요

* 참여병동 환자의 명세서 추출 자료로 환자 재원일수 감소 등 이용자 및 보험자 측면의 효과분석에 활용

○ 작성원칙

-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명세서를 제출
- 참여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MS015)에 참여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와 신고된 병동명칭을 기재
- 동일 수진자가 참여병동과 비 참여병동 모두 이용한 경우 명세서는 하나로 통합하며 참여병동 입원기간(From/To)을 특정내역에 기재
 - * 동일 수진자가 시범사업 적용일 이전부터 참여병동과 비 참여병동에 계속 입원한 경우도 명세서 하나에 통합하되 참여병동 입원기간을 특정내역에 기재
-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S015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 재원기간(*)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참여병동 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된 병동명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ccyyymmdd/ccyyymmdd/X(100) ◆ (예시 1)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인 A병동에 환자가 2025년 6월 29일에 입원하여 7월 10일까지 재원 후 참여병동이 아닌 C병동으로 전실 후 7월 15일에 퇴원한 경우 MS015 20250629/20250710/A병동 (예시 2)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 A, B 병동에 환자가 각각 A병동에 5일(2025. 7. 1. ~ 2022. 7. 5.), B병동에 3일간(2025. 7. 6. ~ 2022. 7. 8.) 입원한 경우 MS015 20250701/20250705/A병동 MS015 20250706/20250708/B병동 (예시 3)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 A병동에 3일간 입원 후 (2025. 7. 2. ~ 2025. 7. 4.), 비 참여병동 C병동에 4일(2025. 7. 5. ~ 2025. 7. 8.), 다시 A병동에 3일간 (2025. 7. 9. ~ 2025. 7. 11.) 입원한 경우 MS015 20250702/20250704/A병동 MS015 20250709/20250711/A병동 ◆ 적용일: 2025.9.1. 진료분부터

V. 시범기관 준수사항

가. 시범사업 안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하여야 함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기관인 점과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참여병동 간호사 등이 보기 쉬운 곳(간호사 station, 탈의실, 책상이나 탁자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나. 시범사업 이행

- 시범기관은 선정 당시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시범사업 관련 인력 현황은 본 지침 “II. 시범사업 내용 5.시범사업 현황신고”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함

라.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시범사업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바. 제제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함
-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위 사항에 대해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때 시범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른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받는 인력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사.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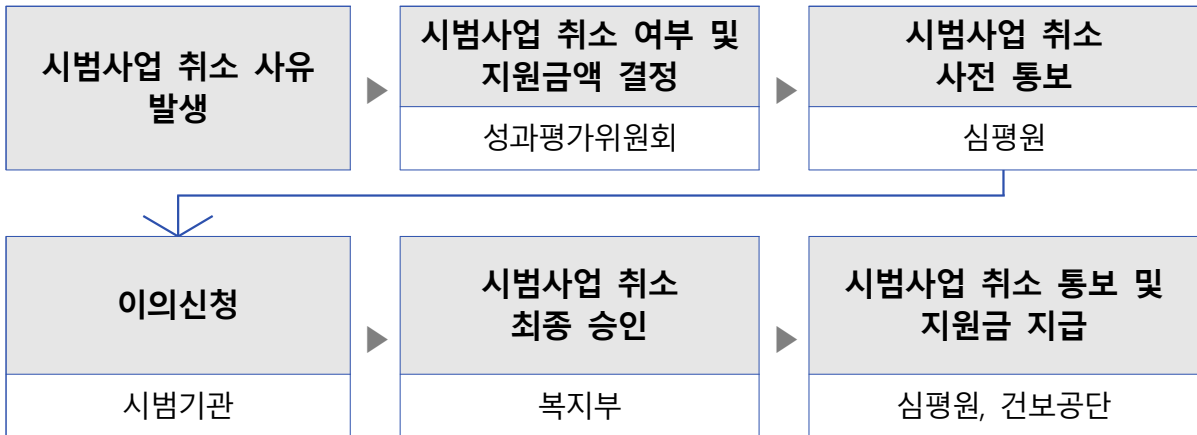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및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또는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시범기관은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아. 시범사업 중단 관련 조치

- 시범사업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됨
 - 심평원은 시범사업 취소 사유 발생 시 시범기관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시범기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시범기관 지정취소 절차 >



-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심평원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철회기관 운영 결과 보고([별지 제17호 서식]) 및 철회요청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및 환수금액 결정

< 시범사업 철회 절차 >



별 지 서 식

- [별지 제 1-1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신청서
- [별지 제 1-2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 [별지 제 2-1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계획서
- [별지 제 2-2호 서식] 교대제 개선 운영 변경 계획서
- [별지 제 3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 [별지 제 4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합의서
- [별지 제 5호 서식]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간호사용)
- [별지 제 6호 서식] 근무 시프트 종류
- [별지 제 7호 서식] 간호사 계획 근무 현황
- [별지 제 8호 서식] 간호사 실제 근무 현황
- [별지 제 9호 서식] 결원 및 대체근무 현황
- [별지 제 10호 서식] 근무변동 현황(임신)
- [별지 제 11호 서식]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 [별지 제 12호 서식] 교육전담부서 구성 현황
- [별지 제 13호 서식] 교육 운영 성과
- [별지 제 14호 서식] 대체간호사 근무일지
- [별지 제 15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 16호 서식] 사업 계획서 미준수 사유서
- [별지 제 17호 서식]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철회기관 운영결과 보고
- [별지 제 18호 서식] 요양기호 변경 신고 및 시범사업 연계 신청서

[별지 제 1-1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본 의료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관련 서류를 첨부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 1.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3. 시범사업 시행 합의서(선택)

[별지 제 1-2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본 의료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교대제 개선 운영계획을 변경 신청하며, 세부 변경 계획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교대제 개선 운영 변경 계획서			

[별지 제 2-1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계획서

I. 요양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¹⁾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소재지		개설일자		설립구분 ²⁾	
병동 (병상)	구분		병동 수	허가병상 수	운영병상 수
	전체				
	일반병동 ³⁾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일반			
		신생아			
		소아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사	구분		재직간호사수	(3년 이상) 경력간호사 ⁴⁾ 수	신규간호사 ⁵⁾ 수
	전체				
	일반병동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환자실	일반			
		신생아			
		소아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기타 ⁶⁾					
간호등급 ⁷⁾	☐ S등급 ☐ 1등급 ☐ 3등급 ☐ 5등급 ☐ A등급 ☐ 2등급 ☐ 4등급 ☐ 6등급				
2. 환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일반병동)					
발생건수 ⁸⁾	낙상(병동 내)		욕창(신규발생)		투약오류
	건		건		건
작성방법					
1) 일반현황: '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2) 설립구분: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 일반현황의 설립구분 입력 01국립, 02공립(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공립), 03법인(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04개인, 05군병원, 06기타 3) 일반병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2)에 의한 병동(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4) (3년 이상) 경력간호사: 재직간호사 중 해당 기관 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5) 신규간호사: 전년도(1~12월) 신규 입사한 간호사 6) 기타: 외래, 수술실 등 병동 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감염관리, PI, QI, 심사실 등 행정업무 간호사 제외) 7) 간호등급: '25년 3분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8) 발생건수: '25년 1~6월 동안 '1.일반 현황-일반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시범기관의 보고 기준에 따른 발생건수)					

II. 교대제 개선 운영 계획

1. 대체간호사 운영						
대체간호사 운영 방식 (신규기관은 팀제만 가능)			☐ 팀제 운영 ☐ 병동 소속 운영			
팀제 전환 계획 (예정일)	일반병동 50%이상 참여		☐ '25. 9. 1.		☐ '26. 1. 1.	
	일반병동 100% 참여		☐ '25. 9. 1.		☐ '26. 1. 1. ☐ '26. 7. 1.	
2-1. 대체간호사 팀제 운영 계획 (2-1과 2-2 중에 운영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 신규기관은 2-1만 작성 가능)						
인력배치	대체간호사 수				지원간호사 수	
	기존운영 ¹⁾	계획운영 ²⁾		계획운영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³⁾			
참여병동	사업 참여 병동 현황					
	참여병동 수 합		참여병동 운영병상 수 합		참여병동 운영병상 비율(% ⁴⁾)	00.0
	병동명 ⁵⁾	운영 병상 수 ⁶⁾	병동명 ⁵⁾	운영 병상 수 ⁶⁾	병동명 ⁵⁾	운영 병상 수 ⁶⁾
2-2. 대체간호사 병동 소속 운영 계획 (신규기관 해당 없음)						
참여병동	운영 병상 수 ⁶⁾	인력 배치 ⁷⁾				
		대체간호사수			지원간호사 ⁸⁾ 수	
		기존운영	계획운영		계획운영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00 병동						
3. 근무제 운영현황						
구 분					인원 수 ⁹⁾	
전체병동 (일반병동)	계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제외)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2개 근무 고정					
	3교대제					
	2교대제					
	대체근무제					
	기타					

참여병동	계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제외)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2개 근무 고정	
	3교대제	
	2교대제	
	대체근무제	
	기타	

4. 근무 시프트 운영현황

시프트 종류 ¹⁰⁾	근무 시작시간	근무 종료시간	비 고
D			
E			
N			
기타(직접기재)			

작성방법

- 1) 기존운영: 공모일 기준 일반병동을 담당하는 대체간호사 수, 미 운영시 '0' 으로 작성
 - 2) 계획운영: 사업시행일('25.9.1.)이후 배치예정 대체간호사 수
 - 3) 추가배치인원: 지원인원 이상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운영 예정인 인원
 - 4) 비율 = 참여병동 운영병상 수 합 / 일반병동 전체 운영병상 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5) 병동명: 신고 된 병동명과 동일하게 작성
 - 6) 운영 병상 수: '25년 3분기 차등제 신고 기준 마지막월 15일자('25년 6월 15일) 운영 병상 수
 - 7) 인력 배치: 사업시행일('25.9.1.)기준 근무하는 병동을 지정하여 작성(1차 사업 인력배치 기준 적용)
 - 8) 지원간호사: '1차 시범사업'의 병동추가간호사
 - 9) 인원수: 병동 전체 합산하여 작성
 - 10) 시프트 종류: 근무표상 기재하는 근무코드 및 각각의 근무시간 작성
(3교대제에서 운영하는 낮번, 저녁 번, 밤번은 각각 D, E, N로 기재)
- ※ 1차 시범기관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 사용한 근무 시프트 이외 추가 할 근무 시프트만 입력

<병상구간별 기준인원(2차)>

구 분	~ 1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 200병상 미만	200병상 이상 ~ 400병상 미만	400병상 이상 ~ 600병상 미만	600병상 이상 ~ 800병상 미만
대체간호사	2	3	4	7	9
지원간호사	1			2	
구 분	800병상 이상 ~ 1,0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 ~ 1,200병상 미만	1,200병상 이상 ~ 1,400병상 미만	1,400병상 이상 ~ 1,600병상 미만	1,600병상 이상 ~
대체간호사	11	13	15	17	19
지원간호사	3				

※ 병상구간에 따른 기준인원으로,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10% 상한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며, 상한 적용 시 대체간호사 우선 배치

<근무제 운영현황 작성 시 참고자료>

구 분	주요 패턴 근무제	기타 근무제
1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시간 대(낮 근무, 저녁 근무) 1개만 고정 근무	야간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 근무
2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특정시간 대 2개를 조합하여 고정 근무 ex) 낮 근무(월,화,수)-저녁 근무(목,금)	대체 근무제 · 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3교대제	· 1일 8시간, 고정 근무 없이 교대근무	휴일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Ⅲ.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계획

1.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현황 ¹⁾							
구분		총 교육전담간호사 수		교육전담간호사 수		현장교육간호사 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병동	☐ 중환자실 ☐ 집중치료실(뇌졸중) ☐ 집중치료실(고위험임산부) ☐ 기타(수술실, 응급실 등)				
2. 교육전담인력 운영 계획 ²⁾							
교육전담부서		총 교육전담 인력 수		교육총괄간호사 수		현장교육간호사 수	
기존 부서명 ³⁾	계획 부서명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⁴⁾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작성방법							
1)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현황: 공모일 기준 참여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참여인원 및 참여병동 작성, 미 참여시 '0' 으로 작성 2) 교육전담인력 운영 계획: 사업시행일('25.9.1.)이후 운영예정인 교육전담인력 수 3) 기존부서명: 기존에 교육전담부서 미 운영시 '없음' 으로 기재 4) 추가배치인원: 지원인원 이상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운영 예정인 인원 ※ 간호·간병통합병동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인력으로 운용 불가 <병상수별 기준인원>							
병상수*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합계	
100병상 미만		1		-		1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1		1		2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1		3		4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1		5		6	
700병상 이상		1		8		9	
* 허가병상 수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참여병동 병상 수 제외							

[별지 제 2-2호 서식]

교대제 개선 운영 변경 계획서

1. 대체간호사 운영					
대체간호사 운영 방식		기존	☐ 팀제 운영 ☐ 병동 소속 운영		
		변경	☐ 팀제 운영 ☐ 기존과 동일		
팀제 전환 계획 (예정일)	일반병동 50%이상 참여	☐ '26. 1. 1.			
	일반병동100% 참여	☐ '26. 1. 1. ☐ '26. 7. 1.			
2. 대체간호사 팀제 운영 계획					
인력배치	대체간호사 수			지원간호사 수	
	기존운영 ¹⁾	계획운영 ²⁾		기존운영 ¹⁾	계획운영 ²⁾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³⁾		
참여병동	사업 참여 병동 현황				
	참여병동 수 합		참여병동 운영병상 수 합		참여병동 운영병상 비율(% ⁴⁾
	병동명 ⁵⁾	운영 병상 수 ⁶⁾	병동명 ⁵⁾	운영 병상 수 ⁶⁾	병동명 ⁵⁾ 운영 병상 수 ⁶⁾
3. 근무제 운영현황					
구 분				인원 수 ⁷⁾	
참여병동	계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제외)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2개 근무 고정				
	3교대제				
	2교대제				
	대체근무제				
	기타				
작성방법					
1) 기존운영: 2025년 12월 1일 기준 참여병동 담당 대체간호사 수, 지원간호사 수(기존 병동소속운영기관은 지원간호사 0으로 작성)					
2) 계획운영: 2026년 1월 1일 이후 배치예정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수					
3) 추가배치인원: 지원인원 이상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운영 예정인 인원					
4) 비율 = 참여병동 운영병상 수 합 / 일반병동 전체 운영병상 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5) 병동명: 신고 된 병동명과 동일하게 작성					

- 6) 운영 병상 수: '26년 1분기 차등제 신고 기준 마지막월 15일자('25년 12월 15일) 운영 병상 수
 7) 인원수: 참여병동 전체 합산하여 작성

<병상구간별 기준인원(2차)>

구 분	~ 1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 200병상 미만	200병상 이상 ~ 400병상 미만	400병상 이상 ~ 600병상 미만	600병상 이상 ~ 800병상 미만
대체간호사	2	3	4	7	9
지원간호사	1			2	
구 분	800병상 이상 ~ 1,000병상 미만	1,000병상 이상 ~ 1,200병상 미만	1,200병상 이상 ~ 1,400병상 미만	1,400병상 이상 ~ 1,600병상 미만	1,600병상 이상 ~
대체간호사	11	13	15	17	19
지원간호사	3				

※ 병상구간에 따른 기준인원으로,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10% 상한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며, 상한 적용 시 대체간호사 우선 배치

<근무제 운영현황 작성 시 참고자료>

구 분	주요 패턴 근무제	기타 근무제	
1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시간 대(낮 근무, 저녁 근무) 1개만 고정 근무	야간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 근무
2개 근무 고정	· 1일 8시간, 특정시간 대 2개를 조합하여 고정 근무 ex) 낮 근무(월,화,수)-저녁 근무(목,금)	대체 근무제	· 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3교대제	· 1일 8시간, 고정 근무 없이 교대근무	휴일전담 근무제	· 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별지 제 3호 서식]**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위 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간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범기관은 참여병동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 운영과 관련한 인력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중단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5. 제재조치 등

-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다. 건보공단은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나목에 의하여 시범기관이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건보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등과 반환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전액 환수되지 않는 경우 현금고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은 시범기관이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6.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합의서

-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본 의료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및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합의합니다.

202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인)

간호사 대표

(인)

노동조합

[별지 제 5호 서식]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간호사용]

간호사성명		면허번호	
전화번호			

본인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기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집·이용 목적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근무형태 확인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 항목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시범사업 종료 후 3년

※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수집·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근무형태 확인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 항목	근무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보유 및 이용기간	시범사업 종료 후 3년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수집·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범사업 종료 후 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시범사업을 위한 근무형태 확인 및 관련 업무수행 2.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수집·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마.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근무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시범사업 종료 후 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시범사업을 위한 근무형태 확인 및 관련 업무수행 2.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수집·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근무 시프트 종류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	--------	--

1.연번	2.시프트 종류	근무정보	
		3.시작 시각	4.종료 시각
	D	0600	1300
	D1	0630	1330
	E	1430	2230

작성방법

1. 연번: 순차적 기재
2. 시프트 종류: 운영 중인 시프트 종류 기재(예시: D, E, N 등)
- 3~4. 근무정보(시작 시각, 종료 시각): 해당 시각 기재, 24시간제로 정수 네자리 기재
(예: 오후 1시 → 1300, 새벽 1시 → 0100)

[별지 제 7호 서식]

간호사 계획 근무 현황

1.년도	2. 월	3.연번	기본사항																											
			4. 병동명	5. 근무형태	6. 근무제	7. 간호사 구분	8. 직책	9. 성명																						
기본사항																														
10. 면허번호			11. 입사일자		12. 퇴사 일자		13. 병동 시작일		14. 병동 종료일																					
15. 일별근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병동명: 병동 신고현황 목록 중 참여병동(병동구분: 일반) 선택
5. 근무형태: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6. 근무제: 구분에 따라 선택(① 1개 근무 고정(야간제외) ②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③ 2개 근무 고정, ④ 3교대제, ⑤ 2교대제, ⑥ 대체 근무제(플로팅) ⑦ 단시간 근무제, ⑧ 휴일전담근무제 ⑩ 기타(직접 기재)
7. 간호사 구분: 간호사, 야간전담간호사,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추가대체간호사
(추가대체간호사: 시범사업 지원인력 이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운영하는 인력)
8. 직책, 9. 성명, 10 면허번호, 11. 입사일자, 12 퇴사일자, 13. 병동시작일, 14. 병동종료일: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15. 일별근무: 시프트 기재(근무 시프트 종류에 없는 시프트 입력 불가)

[별지 제 8호 서식]

간호사 실제 근무 현황

1.년도	2. 월	3.연번	기본사항																											
			4. 병동 명	5. 근무형태	6. 근무제	7. 간호사 구분	8. 직책	9. 성명																						
기본사항																														
10. 면허번호	11. 입사일자	12. 퇴사 일자	13. 병동 시작일	14. 병동 종료일	15. 타 기관 경력																									
16. 일별근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병동명: 병동 신고현황 목록 중 참여병동(병동구분: 일반/교대제개선/특수(대체간호사팀))선택
5. 근무형태: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6. 근무제: 구분에 따라 선택(① 1개 근무 고정(야간제외) ② 1개 근무 고정(야간전담), ③ 2개 근무 고정, ④ 3교대제, ⑤ 2교대제, ⑥ 대체 근무제(플로팅) ⑦ 단시간 근무제, ⑧ 휴일전담근무제 ⑩ 기타(직접 기재)
7. 간호사 구분: 간호사, 야간전담간호사,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추가대체간호사
(추가대체간호사: 시범사업 지원인력 이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운영하는 인력)
8. 직책, 9. 성명, 10. 면허번호, 11. 입사일자, 12. 퇴사일자, 13. 병동시작일, 14. 병동종료일: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15. 타 기관 경력: 시범사업 기관 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의 경력의 합, 정수만 입력(개월 수)
16. 일별근무: 시프트 기재(근무 시프트 종류에 없는 시프트 입력 불가)

[별지 제 9호 서식]

결원 및 대체근무 현황

1. 년도	2. 월	3. 연번	결원발생현황					
			4. 병동 명	5. 결원 발생일	6. 면허번호	7. 성명	8. 계획근무	9. 사유
대체근무현황								
10. 대체유무	11. 병동구분	12. 병동 명	13. 성명	14. 면허번호	15. 실제근무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병동명: 병동 현황신고 목록 중 결원간호사의 병동 선택
5. 결원발생일: 병가, 조사, 사직, 휴직, 가족돌봄, 임신간호사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날짜 선택
6. 면허번호: 결원간호사의 면허번호 입력 후 조회
7. 성명: 면허번호 조회에 따라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8. 계획근무: 결원발생일의 결원간호사 계획근무 입력
9. 사유: 결원발생사유(병가, 조사, 사직, 휴직, 가족돌봄, 임신간호사 발생, 기타) 중 선택
10. 대체유무: 결원발생에 대한 대체근무 시행여부 Y/N 중 선택
11. 병동구분: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와 연동 - 병동구분 '교대제 개선, 특수' 중 선택
12. 병동명: 병동구분 선택에 따른 병동 현황신고 목록 중 대체간호사의 병동(팀) 선택
13. 성명: 병동명에 따른 인력 신고현황 목록 중 대체간호사 성명 선택
14. 면허번호: 성명 선택에 따라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15. 실제근무: 결원발생일 대체간호사의 실제근무 입력

[별지 제 10호 서식]

근무변동 현황(임신)

1.년도	2. 월	3.연번	근무변동 발생현황					
			4. 병동명	5. 근무 변동일	6. 면허번호	7. 성명	8. 계획근무	9. 실제근무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병동명: 병동 현황신고 목록 중 근무변동 발생 간호사의 병동 선택
5. 근무변동일: 해당 날짜 선택
6. 면허번호: 근무변동 간호사의 면허번호 입력 후 조회
7. 성명: 면허번호 조회에 따라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8. 계획근무: 근무변동일의 근무변동간호사 계획근무 입력
9. 실제근무: 근무변동일의 근무변동간호사 실제근무 입력

[별지 제 11호 서식]

환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

1.년도	2. 월	3.연번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			
			4. 병동 명	5. 낙상발생 건수	6. 욕창 신규발생 건수	7. 투약오류 발생건수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병동명: 병동 현황신고 목록(**병동구분: 일반**) 자동 연동
5. 낙상발생 건수: 해당 월 참여병동 내에서 발생한 낙상 발생 건수, 정수로 입력
6. 욕창 신규발생 건수: 해당 월 참여병동 내에서 발생한 신규 욕창 발생 건수, 정수로 입력
7. 투약오류 발생건수: 해당 월 참여병동 내에서 발생한 투약오류 발생 건수, 정수로 입력

[별지 제 12호 서식]

교육전담부서 구성 현황

1. 년도	2. 월	3.연번	기본사항																											
			4. 병동 구분	5. 간호사 구분	6.성명	7. 면허번호	8. 생년월일	9.성별																						
기본사항			교육 전담 부서		교육이수현황																									
10. 근무형태	11. 입사일자	12. 퇴사일자	13. 병동 시작일	14. 병동 종료일	15. 교육이수 (O/X)	16. 교육이수날짜																								
17. 일별근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병동구분: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5. 간호사 구분: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추가교육간호사 中 선택
(추가교육간호사: 시범사업 지원인력 이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운영하는 인력)
6. 성명, 7. 면허번호, 8.생년월일, 9. 성별, 10. 근무형태, 11. 입사일자, 12 퇴사일자, 13. 병동시작일, 14. 병동종료일: 인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15. 교육이수(O/X): 교육 이수한 경우 O, 이수하지 않은 경우 X선택
16. 교육이수날짜: 교육이수 날짜 선택
17. 일별근무: 실제근무입력(근무/휴무 중 입력)

[별지 제 13호 서식]

교육 운영 성과

구분	제출자료
연간·분기별 교육 계획서 교육 평가 계획서	파일 첨부
교육일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입력(수시)
교육평가 결과서	파일 첨부
교육프로그램/교육생 평가결과 조직 내 반영 여부	파일 첨부

연간·분기별 교육프로그램 시행 계획서 - []년 []분기

◎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표

◎ 연간교육프로그램 시행 일정

연 번	교육내용	대상	시 간	강 사	교육 장소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1	환자간호(활력징후 및 신체사정, 호흡간호, 투약간호)	25년도 신규간호 사 00명	3 시 간	00 0	배치부 서													
2	의료정보 활용 (OCS, EMR 활용)	25년도 신규간호 사 00명	2 시 간	00 0	전산교 육실													
3																		

◎ 분기별 교육 운영 계획(강사, 교육대상,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포함)
-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연간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세부내용 작성

구분		교육세부내용	대상	일자 및 시간	강사	교육장소
0분기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대한간호협회, 2019.10.)상 역량기반 교육과정(표 1) 내용을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표 1> 역량기반 교육과정 내용

핵심역량	항 목	
환자간호	• 활력징후 및 신체사정 • 환자관리 : 입·퇴원환자간호 • 호흡간호 : 산소요법, 흡인 등 • 영양관리 : 위관영양 등 • 배설간호/배뇨간호 • 상처관리 • 수술/시술/처치 전후 간호 • 검사전후 간호 • 투약간호/정맥주사간호 • 항암화학요법 간호	• 수혈간호 • 통증간호 • 감염관리간호 • 의료기기 교육 • 심폐소생술 • 환자체험 • 환자가족교육 • 의무기록 • 환자질환별 교육
의사소통과 협력	• 인수인계교육(SBAR활용) •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	• 심리지원 및 임파워먼트 • 타부서/타직종 간 협력
환자안전과 질 향상	• 환자안전 : 낙상/욕창/투약안전/신체보호 대 사용/자살, 자해 예방 • 시설안전(소방 및 재난관리)	• QI 활동 •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 • 감염감시체계
의료정보활용	• 정보보안 • 의무기록 관리	•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용(OCS, EMR, 의료학술 정보 등)
전문성과 리더십	• 간호전문직과 윤리 • 간호사 의무와 책임	• 스트레스 관리 • 셀프리더십(시간관리, 자기조절)

교육 평가 계획서 - ()년 ()분기

◎ 교육전담인력에 의한 교육생 평가 및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계획

◎ **교육생 평가**(교육생이 습득한 지식, 술기, 태도, 적용도 등에 대해 교육전담인력이 행하는 평가)
-평가 대상자별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방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평가기간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대상	평가방법

- ▶평가기간: 평가 수행 기간을 기재
- ▶평가내용: 지식, 술기, 태도, 현업적용도 등 평가사항을 기재
- ▶평가자: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또는 현장교육간호사)
- ▶평가대상: 신규간호사 등을 기재
- ▶평가방법: 이론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면담 등 평가 수행 방법을 기재

◎ **교육프로그램 평가**(교육프로그램 내용 자체 및 운영과정, 교재·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소 등에 대해 교육전담인력 및 교육생이 행하는 평가)
-교육프로그램별 교육프로그램명,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방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평가기간	교육프로그램 명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방법

교육 일지 - []년 []분기

1. 년도	2. 월	3. 연번	교육생 현황					
			4. 면허번호	5. 성명	6. 생년월일	7. 입사일자	8. 퇴사일자	9. 병동명
교육생 현황		교육간호사 현황	교육내용					
10. 부서 배치일	11. 경력	12. 교육 담당자	13. 교육시작 일자	14. 교육종료 일자	14. 교육내용 분류	15. 교육 세부내용	16. 교육 소요시간	17. 교육방법
							분	

작성방법
1. 년도, 2. 월: 해당 년도, 월 기재 3. 연번: 자동 생성 4. 면허번호: 근무변동 간호사의 면허번호 입력 후 조회 5. 성명, 6. 생년월일, 7. 입사일자, 8. 퇴사일자: 면허번호 조회결과에 따라 입력 신고현황 자동 반영 9. 병동명: 배치된 부서명 입력(부서 배치 전일 경우 '배치 전' 입력) 10. 부서배치일: 교육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일 선택(부서 배치 전일 경우 '00000000' 입력) 11. 경력: 신규/경력/이동/복직 中 선택 (신규: 교육시행일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인 간호사) 12. 교육담당자: 입력 신고 현황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팀' 간호사 및 '전체(집합교육)' 中 선택 (공통교육 등 집합교육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체(집합교육)' 선택) 13. 교육시작일자: 교육 시작 날짜 선택 14. 교육종료일자: 교육 종료 날짜 선택 15. 교육 내용분류: 환자간호/의사소통과 협력/환자안전과 질 향상/의료정보활용/전문성과 리더쉽 中 선택 16. 교육세부내용: 교육내용 간략하게 자술기재(예: 수혈간호, 의료정보시스템의 활동) 17. 교육소요시간: 10분 단위로 교육소요시간 숫자로 입력('13. 교육시작일자'와 '14. 교육종료일자' 사이의 교육 수행시간의 합) 18. 교육방법: 그룹강의/실습/시뮬레이션/1:1지도/기타 中 선택

교육 평가 결과서 - ()년 ()분기

◎ 교육생 평가결과 및 학습지원

평가기간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

- ▶평가기간: 평가 수행 기간을 기재
- ▶평가내용: 지식, 술기, 태도, 현업적용도 등 평가사항을 기재
- ▶평가자: 교육총괄간호사 또는 현장교육간호사
- ▶평가대상: 신규간호사 등을 기재
- ▶평가방법: 이론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면담 등 평가 수행 방법을 기재
- ▶평가결과: 교육생 평가 결과 도출된, 교육생이 보완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기재

◎ 교육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교육활용

평가기간	교육프로그램 명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결과

- ▶평가기간: 평가 수행 기간을 기재
- ▶교육프로그램 명: 교육프로그램명을 기재
- ▶평가내용: 교육프로그램 내용 자체 및 운영과정 적절성, 교재·교육기간·교육시간 및 교육장소 적절성 등 평가 사항을 기재
- ▶평가자: 교육총괄간호사 또는 현장교육간호사, 신규간호사 등 교육대상자
- ▶평가방법: 설문지, 간담회 등 평가 수행 방법을 기재
- ▶평가결과: 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 도출된, 교육프로그램 내용 자체 및 운영과정 상 보완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기재

◎ 교육관련 우수사례.제안.의견.개선방안 등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타 기관 등과 공유할 우수 사례, 제안이나 의견·개선방안 등

◎ 조직 내 환류 방법 -간담회, 설명회, 교육 등

[별지 제 14호 서식]

대체간호사 근무일지			
1. 요양기관명			2. 성명
3. 근무일자			4. 근무시간
5. 근무내용	☐ 대체간호업무		☐ 참여병동 지원업무
☐ 대체간호업무	병동명		
	간호사명		
☐ 참여병동 지원업무	업무내용*	오전	
		오후	
6. 기타			
* 신입간호사 업무지원, 입/퇴원/전동 환자 간호, 시술/수술 환자 간호, 휴게시간 지원 등 ※ 대체간호사 근무일지 작성내용 포함 시 서식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 가능			

[별지 제 15호 서식]

이의신청서			
1. 요양기관명			
2. 요양기관기호			
3. 결과 통보	a. 통보서 문서번호 예) 수가체계혁신부-000	b. 통보서 도달한 날	
4. 결과 통보 내용			
5. 이의신청 사유	☐ 성과평가 결과	☐ 시범사업 환류 결과	☐ 기타
6. 이의신청 내용 (상세히 기술)			
성과평가 결과 및 시범사업 환류 결과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비고	구체적인 이의신청 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 시 별지 사용)하고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 17호 서식]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철회기관 운영결과 보고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병원 (11111111)	사업 참여기간	0000.00.00. ~ 0000.00.00		
소재지	서울 중구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시범사업 참여동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운영현황	○ 대체간호사 팀 운영 시 (단위: 개, 명)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운영현황				
	참여 병동 수	참여병동 운영 병상 수 합	대체간호사 수		지원간호사 수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 대체간호사 병동 운영 시 (단위: 개, 명)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운영현황				
	참여 병동	운영 병상수	대체간호사 수		지원간호사 수
			지원인원	추가배치인원	
	○○병동				
○○병동					

		(단위: 명)								
		교대 근무제 운영현황								
		1 고정 근무			2 고정 근무			2교대	3교대	기타 근무제
		낮 근무 (D)	저녁 근무 (E)	야간 전담 (N)	낮/저녁 고정 (D/E)	낮/밤 고정 (D/N)	저녁/밤 고정 (E/N)			
	시범 사업 전									
	시범 사업 후									
		* 시범사업 참여 병동 대상으로, 간호사 1인당 주된 근무형태 표시 ** 시범사업 전: [별지 제2-1호 서식] 시범사업 계획서 상 참여병동 근무제 별 간호사 수 시범사업 후: 시범사업 철회 직전 월 기준 참여병동 근무제 별 간호사 수								
교육전담간호사 운영현황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교육총괄간호사		시범사업 전		0 명				
		현장교육간호사		시범사업 후		0 명				
		신규간호사 총 교육인원							0 명	
		신규간호사 1인당 평균 교육 횟수							0 회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시행 후 신규간호사 이직 현황]								
		시범사업 시작 전 신규간호사 이직률 (00 %) •직전 1년간 입사한 간호사 수의 합㉠ (00 명) •㉠ 중 사직자 수의 합 (00 명) 시범사업 운영 1년 미만 기관 신규간호사 이직률 (00 %)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입사한 간호사 수의 합㉡ (00 명) •㉡ 중 사직자 수의 합 (00 명) 시범사업 운영 1년 이상 기관 신규간호사 이직률 (00 %) •시범사업 운영 종료 직전 1년간 입사한 간호사 수의 합㉢ (00 명) •㉢ 중 사직자 수의 합 (00 명)								
		○ 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육 교재,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활용·운영 방법 등)								
운영 후 변화 및 그 외 긍정적 영향		예시) •결근발생에도 근무변동이 없어 예측 가능한 생활 가능 •1고정근무, 2고정근무 등 선호하는 근무패턴 운영으로 만족도 향상								

철회사유 및 사업 개선 필요사항		※ 자유로운 철회 사유 작성 예시) • 불충분한 지원금으로 추가 인력 채용 어려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환 등
향후 계획	자체적인 근무제 개선 계획	※ 시범사업 종료 후 자체적인 근무환경 개선 계획 예시) • 선호 근무제 반영 등 근무제 선택 운영여부 • 대체간호사 배치 지속 여부 등
	교육전담간호사 자체 운영 계획	※ 교육전담부서 및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운용 계획 예시) • 교육전담부서 및 현재 교육전담간호사 운용 유지 • 특수분야(응급실, 중환자실, 소아과 등)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기 지원 중인 교육전담간호사 및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의 업무 복귀 계획 또는 근무 계획	※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계획 예시) • 현재 근무 병동 유지 • 기관 상황 및 간호사 경력 등 고려하여 인력 재배치 • 교육총괄·현장교육간호사 확대/축소 등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시범사업 대상 관련
2. 사업 운영 관련
3. 인력 배치 관련
4. 성과평가 관련
5. 현황신고 관련
6. 지원금 지급 관련
7. 시범사업 효과평가 관련
8. 기타

1

시범사업대상 관련

Q1-1

지침에서 언급되는 ‘1차 시범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시범사업 공모(1~6차)에 신청 후 선정된 기관 중, 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없이 2차 시범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Q1-2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 수 기준이 있나요?

- 해당분기 차등제 기준 일반병동* 산정대상 간호사 수의 합이 20명 이상 (산정재직일수 반영한 산정인원)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 병상수의 50%이상 참여 시 참여 가능한 한시적 예외 적용기간('25년 9월~ '26년 6월)에도 시범사업 참여병동의 간호사 수 합은 20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시범사업 운영기간동안 간호사 수 조건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간호사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될 수 있으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참여요건 중 일반병동 간호사 수의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매 분기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된 ‘간호사 수 현황’의 병동 별 산정대상 간호사의 산정재직일수로 간호사 수를 확인합니다.
- * '25년 7월 공모의 경우 '25년 3분기 차등제로 확인

(산출방법) 차등제 신고기준 산정인원의 산정재직일수(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를 분기일수로 나눈 인원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

$$= \frac{\text{'간호사 수 현황'에서 병동 별 산정인원의 산정재직일수의 합(전일제 40시간, 단시간, 야간전담 포함)}}{\text{적용 분기일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확인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illegible]

- (산출식) (① 전일제 40시간 + ② 단시간 소계 + ③야간전담 소계) / ④

* 계약직도 포함

⇒ 7병동 간호사수: $(364 + 0 + 10.2) / 92 = 4.07$ 명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 교대제 개선과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두 가지 사업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Q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사업과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 목적 및 교육전담인력의 역할이 상이하고, 교육체계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다른 사업에서 배치된 교육전담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교대제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의 교육전담인력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Q1-6

시범사업 참여요건 중 간호등급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사업 신청 시에는 공모 시작일이 포함된 분기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기준으로 시범기관을 선정합니다.
- 또한, 시범사업 운영기간동안 간호등급 조건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간호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될 수 있으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사업 운영 관련

Q2-1

대체간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대체간호사는 참여병동에서 긴급결원 발생 시 결원 근무자의 병동에서 대체근무를 수행하고, 결원 미 발생 시에는 참여병동 내에서 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 대체간호사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환자 간호외의 업무는 불가합니다.

Q2-2

대체간호사는 근무 병동에 제한이 있나요?

- 대체간호사는 참여병동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비 참여병동에서 근무는 제한됩니다.
- 대체간호사팀 또는 교대제개선 병동 소속으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되, 결근사항 발생 시 참여병동 내에서 대체 근무를 실시하면 됩니다.
- '26년 7월 이후에는 전체 일반병동 참여하여야 하므로, 정신과 폐쇄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내에서 대체근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Q2-3

지원간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간호사는 대체간호사 팀 지원업무* 또는 필요시 참여병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 결원 현황 취합, 시범사업 자료제출, 기타 팀 관련 행정업무 등

Q2-4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는 어떤 근무제로 운영해야 하나요?

- 대체간호사, 추가간호사 근무제는 시범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결원 발생 시 적시에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대체간호사 간 교대근무를 권고합니다.

Q2-5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도 계획근무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체 및 지원간호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계획근무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지만, 대체 및 지원간호사 배치 및 근무 확인을 위해 실제근무표는 근무 익월 11~15일 사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2-6

1차 시범기관은 언제부터 대체간호사를 팀제로 운영해야 하나요?

- 1차 시범기관의 대체간호사 팀 운영 유예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1차 시범사업' 인력지원 및 운영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시범사업' 신청 시 대체간호사 팀제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하며 '26년 1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인력배치 및 대체간호사 팀 운영을 해야 합니다.

Q2-7

1차 시범기관으로 '26년부터 팀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전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팀제 전환 계획 제출하였으나, '26년부터 팀 운영 미실시 또는 중도 철회하는 경우 '25년 9~12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2-8

1차 시범기관의 경우 '25.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인력지원 및 운영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개 병동당 대체간호사 1명, 1개 병동당 지원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마지막으로 운영했던(25.8월) 병동 수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으나, 참여병동을 1차 사업과 다르게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9

1차 시범기관의 경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도 '25.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병상 구간별 인력지원 기준으로 참여가능한가요?

- '1차 시범사업' 인력지원 및 운영방법은 교대제 개선 지원 사업만 해당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참여기관과 1차 시범기관 구분 없이 시범사업 시행일('25.9.1.)부터 '2차 시범사업' 병상 수 기준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Q2-10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교육전담간호사처럼 특정 병동 교육만 담당해야 하나요?

-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를 제외한 기관 전체 간호사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 다만,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지원받는 병동의 간호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11

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 업무 외 타 업무도 겸임이 가능한가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은 교육체계 구축 및 신규간호사 정착을 위해 교육 전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교육총괄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는 교육전담부서(팀)에 소속되어 교육만 전담해야 하므로 교육 이외의 업무수행은 불가합니다.

3

인력 배치 관련

Q3-1

‘2차 시범사업’에서는 야간전담간호사 참여병동 당 10% 이상 배치 기준이 없는데,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야간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은 삭제되었으므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Q3-2

사업시행일(‘25.9.1.)의 인력 배치기준 및 인력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25년 10월 11~15일에 제출 된 9월 실제근무표 및 교육전담부서 구성 현황 자료로 확인합니다.
- 인력 미 배치 또는 경력기준 등 인력기준 미준수 시 성과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감 수준 등을 결정합니다.

Q3-3

지원인력(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의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직·계약직 모두 배치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원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지원 불가

Q3-4

지원인력(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은 병상 수 별 기준인원을 모두 배치해야 하나요?

- 지원인력은 시범기관 병상 수 별 규모에 따른 기준인원 모두를 배치해야 합니다.

Q3-5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인력배치 기준 병상수는 어떻게 되나요?

- 허가 병상 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 수 및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서 지원받는 필수의료병동(중환자실, 집중치료실에 한함)의 병상 수*를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환자실은 허가 병상 수, 집중치료실은 운영 병상 수 기준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참여여부와 관계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상 수는 제외되며,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은 참여하는 기관에 한하여 지원받는 병동의 운영 병상 수만큼 제외됩니다.

(예시) A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병상 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미 참여,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중환자실 지원 중
- 허가 병상 수 960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수 196병상, 중환자실 허가 병상 수 90병상, 집중치료실 운영 병상 수 19병상

⇒ **기준병상 수: 674병상**

= 960(허가 병상 수) - 196(간호간병 병상 수) - 90(중환자실 병상 수)

- 신규참여기관과 1차 시범기관 구분 없이 시범사업 시행일('25.9.1.)부터 '2차 시범사업' 병상 수 기준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Q3-6

지원인력(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은 신규채용 하여야 하나요?

- 시범사업 이전부터 근무 중인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Q3-7

대체간호사,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자격요건 중 경력은 소속병원 경력만 인정되나요?

- 타 기관의 경력도 인정되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력만 인정되며, 한방·요양·치과·정신병원, 의원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조2항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만 인정
- 타 기관에서의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실제근무표 제출 시 타 기관 경력 입력 및 증빙자료(경력증명서)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 단, 대체간호사 경력기준 완화 인력(만 2년 이상(상종 3년))은 소속병원의 경력만 인정되며 지원금이 감산(5~10%)됩니다.

(예시) A상급종합병원의 B, C, D 대체간호사의 경력에 따른 배치가능 여부

- B간호사: A병원 3년 근무 → 배치 가능(10% 감산적용)
- C간호사: A병원 2년 근무 + F병원 2년 근무 → 배치 불가능
- D간호사: F요양병원 5년 근무 → 배치 불가능

Q3-8

지원인원 수를 초과하여 대체간호사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도 되나요?

- 지원인원수를 초과하여 대체간호사나 교육전담간호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추가배치 된 인원 또한 세부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지침에 따라 인력 신고 및 자료제출 하여야 합니다.
- 위 기준을 충족한 인원내 한하여 활동내역(대체근무, 교육수행)이 지표 평가에 반영됩니다.

Q3-9

참여병동 총 간호사수의 10%가 교대제 개선 지원인원 수보다 적습니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는 몇 명 배치해야 하나요?

- 참여병동 운영 병상 수 기준이 아닌 총 간호사 수의 10%* 상한 적용하여 인원 배치 가능하며, 상한 적용 시 대체간호사를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 소수점 이하 절사(예시: 총 간호사수 88명 → 10% 인원 8.8명 → 절사 후 8명)

(예시)

- (A참여기관) 참여병동 총 간호사수: 67명, 운영병상 수: 520병상

- 참여병동 총 간호사수의 10%(6명)가 병상 수에 따른 기준인원(400병상 이상 ~ 600병상 미만 9명(대체 7명, 지원2명)보다 적으므로 **10%에 해당하는 6명 배치가능**
- 대체간호사를 우선 배치해야 하므로 대체간호사만 6명 배치(지원간호사 0명)

- (B참여기관) 참여병동 총 간호사수: 102명, 운영병상 수: 720병상

- 참여병동 총 간호사수의 10%(10명)가 병상 수에 따른 기준인원(600병상 이상 ~ 800병상 미만 11명(대체 9명, 지원2명)보다 적으므로 **10%에 해당하는 10명 배치가능**
- 대체간호사를 우선 배치해야 하므로 대체간호사 9명, 지원간호사 1명 배치

Q3-10

교육총괄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 자격 요건 중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 배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한간호협회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 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과정(기본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1차 시범기관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1차 시범사업' 첫 배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이수 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가 시행될 예정으로, 고시 시행에 따라 양성교육 기관 및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11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로 인정되나요?

-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는 「간호법」 제32조제2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로 인정됩니다.

4

성과평가 관련

Q4-1

팀제 운영 유예기간('25년 9~12월)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1차·2차 시범사업의 인력지원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 결원 대체율, 계획 근무 준수율

○ 단, 1차 시범기관 중 '1차 시범사업' 인력지원 및 운영방법 유지기관은
지원금 차등지급 시 지급률을 100%로 상한 적용합니다.

Q4-2

결원 대체율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결원 대체율은 참여병동 결원 발생 일수¹⁾와 대체일수²⁾를 비교하여
결원 발생에 대한 대체근무일수 비율을 확인합니다.

1) 결원 발생 일수: 참여병동의 결원발생 일수의 합, 휴일·대체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긴급결원 일수

2) 대체일수: 대체간호사가 수행한 대체근무일수의 합

Q4-3

계획 근무 준수율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계획 근무 준수율은 계획 근무표¹⁾와 실제 근무표²⁾를 비교하여 계획
대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수를 확인합니다.

○ 단, 긴급결원(결근, 경조사 등) 발생에 따라 대체간호사가 대체근무한
경우와 임신으로 인한 근무변동은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수로 인정됩니다.

1) 계획 근무표: 2개월 단위로 사전에 작성하는 근무표로 병동 전체의 근무인원
및 듀티(duty)를 의미하며, 근무 계획표 상 첫 번째 달의 전월에 제출

2) 실제 근무표: 실제로 시행된 근무표를 의미하며, 근무 월 익월에 제출

Q4-4

교육 운영 성과에서 신규간호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간호사는 교육시행일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 타 병원 경력이 있는 간호사 또한 해당기관 입사일자 기준으로 신규간호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Q4-5

(신규간호사 이직률)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평가대상기간 동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해당기관 입사 730일 이하인 자로,
- 평가대상기간 마지막월 14일 기준으로 신규간호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입·퇴사일자로 산출)

(예시) 평가 대상기간이 '25.7월~12월인 경우,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대상자

- 평가 대상기간인 '25.7월~12월 현황으로 산정한, '25년 4분기~'23년 1분기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료를 활용하여 신규간호사 대상자 산출
⇒ '25.12.14. 기준, 입사 730일 이하인 간호사

Q4-6

(경력간호사 보유율) 3년 이상 경력간호사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평가대상기간 동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해당기관 입사 1,095일 이상인 자로,
- 평가대상기간 동안 매분기 마지막월 14일 기준으로 경력간호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입·퇴사일자로 산출)

(예시) 평가 대상기간이 '25.7월~12월인 경우, 경력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대상자

- 평가 대상기간인 '25.7월~12월 현황으로 산정한, '25년 4분기~'26년 1분기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료를 활용하여 경력간호사 대상자 산출
⇒ '25년 4분기('25. 9.14.) 기준, 입사 1,095일 이상인 간호사
'26년 1분기('25.12.14.) 기준, 입사 1,095일 이상인 간호사

Q4-7

휴직중인 간호사도 신규간호사 이직률 및 경력간호사 보유율 지표 산출에 포함이 되나요?

- 평가대상기간의 병동 근무 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평가 대상기간이 '25.7월~12월인 경우

- 평가 대상기간인 '25.7월~12월 현황으로 산정한, '25년 4분기~'26년 1분기 일반 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료 활용

성명	입사일자	육아휴직
김OO	'24.3.6.	'24.10.1~'25.9.30.
	'25년 4분기~'26년 1분기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현황에 신고(재직일수 산정) → 지표값 산출 시 포함	
이OO	'24.3.6.	'24.5.1.~'26.3.30.
	'25년 4분기~'26년 1분기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사 현황에 미신고(재직일수 미산정) → 지표값 산출 시 제외	

Q4-8

대체간호사 경력 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반기 시작 월 1일(1.1., 7.1.) 기준으로 경력 요건을 산정합니다. 반기 시작월 기준 경력 미충족 대체간호사가 반기 내에 경력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평가대상기간 지원금 감산을 적용합니다.

(예시) 7.1.기준 A종합병원의 B대체간호사의 경력이 만 2년 11개월

- 평가대상기간(7.1. ~ 12.31.)중 경력이 만3년을 넘어 경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7.1.자 기준 적용하여 평가대상기간(7.1. ~ 12.31.)에 대해 5%감산 적용

- 인력 변경으로 인하여 반기 중간에 배치된 경우 첫 배치일자 기준으로 경력 요건을 산정합니다.

(예시) A상급종합병원의 대체간호사가 B간호사에서 C간호사로 4.1.에 변경 된 경우

- B간호사: A병원 만 3년 6개월 경력 → 배치기간(1.1. ~ 3.31.) 10%감산
- C간호사: A병원 만 2년 + D병원 만 4년 경력 → 배치기간(4.1. ~ 6.30.) 감산 미적용

Q4-9

평가대상기간 중 간호등급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나요?

○ 평가대상기간 해당 분기의 간호등급을 확인합니다

평가대상기간	간호등급 모니터링
'25년 9~12월	'25년 4분기
'26년 1~6월	'26년 1,2분기
'26년 7~12월	'26년 3,4분기
'27년 1~6월	'27년 1,2분기
'26년 7~12월	'27년 3,4분기

Q4-10

평가대상기간 반기 중 1개 분기는 간호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역가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지역가산은 간호등급 기준(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완화된 등급 기준(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을 적용하는 경우 시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지원금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평가대상기간 내 간호등급 기준을 충족한 분기에 한해서 지원금을 10% 가산합니다.

(예시) '26년 상반기('26년 1,2분기) 의료취약지 소재 A종합병원의 간호등급

분기	간호등급	가산적용 여부
'26년 1분기	1등급	10%가산
'26년 2분기	2등급	-

5

현황신고 관련

Q5-1

시범기관은 심평원에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하나요?

- 모든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신청 전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이하 '차등제 산정현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매 분기마다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5-2

교대제 개선 참여병동 간호사 인력현황 변경 발생 시 변경신고 방법 및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참여병동 간호사 인력현황 변경 발생 시, 시범사업 관련 제출 서류를 참조 하여, 평가 자료 제출기한 내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https://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

Q5-3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를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인건비 지원인력인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제외 인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인력 이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배치하는 간호사 또한 차등제 제외 인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5-4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전담인력도 ‘교육전담간호사팀’에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 타 시범사업을 통해 배치된 교육전담인력은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교육전담간호사팀’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5-5

대체간호사팀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원간호사를 참여병동 소속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대체간호사팀제 운영 시 지원간호사는 반드시 대체간호사팀 소속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지원금 지급 관련

Q6-1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수가가 있나요?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므로 별도의 수가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지원금 청구절차 없이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6-2

지원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액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 1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건은 시범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Q6-3

시범사업 참여규모별 연간 지원금 외에 인건비도 추가로 지원되나요?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 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Q6-4

건보공단인 최종지원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최종지원금 안내 후 건보공단에서 기관 요양급여비용 계좌에 '인센티브' 내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Q6-5

시범사업기간 동안, 기준 인력(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 및 시범기관 지정에도 변화가 있나요?

○ 시범사업기간 동안, 유예기간(15일)을 초과하여 기준 인력을 미 배치한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및 시범기관 지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단, 교육전담간호사의 부재기간이 16일~30일 이내인 경우 지급률 차감 없이 부재기간만 지원금 미지급

○ 부재기간에는 토, 일, 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인력별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수준 및 시범기관 지정취소 여부를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7

시범사업 효과평가 관련

Q7-1

명세서에 특정내역(MS015)를 기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사업 참여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명세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Q7-2

참여병동 입원 중 비 참여병동으로 전실되거나, 참여 A병동에서 참여 B병동으로 전실 하는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명세서를 기간별로 분리·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채용기간이 병동별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15'를 작성합니다.
(전실하는 당일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동쪽으로 채용기간을 작성)

(예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병동 A, B 병동에 환자가 각각 A병동에 5일 (2025. 7. 1. ~ 2025. 7. 5.), B병동에 3일간(2025. 7. 6. ~ 2025. 7. 8.) 입원한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S015	20250701/20250705/A병동
1		MS015	20250706/20250708/B병동

주) 발생단위구분: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Q7-3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해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 및 교육전담인력과 교육 대상 간호사 성명, 면허번호, 근무표, 경력증명서 등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시범기관은 해당 간호사에게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시범사업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간호사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교육전담인력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변경으로 인해 동의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Q8-1

교대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인력은 지원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 본 시범사업은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시범기관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 또한, 인건비의 약 80% 수준(상급종합병원은 70%)을 지원하므로, 초과하는 인건비는 시범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Q8-2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시범기관도 연계가 되나요?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연계된 경우, 시범기관도 연계가 가능하며 성과평가도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산출합니다.
- 해당 기관은 [별지 제 18호 서식]요양기호 변경 신고 및 시범사업 연계 신청서 및 변경 전·후 의료기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시행 전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연계 기관의 경우, 간호인력 전문성 지표 산출 시 변경 전 기관의 차등제 자료를 연계하여 산출

Q8-3

1차 시범기관은 2차 시범사업 신청 시 참여병동 변경이 가능한가요?

- 2차 시범사업 신청 시 참여병동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의 인력지원 및 운영방법 유지 시에는 1차 시범사업 참여병동 수보다 많은 병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8-4

시범사업 참여 병동을 시범사업 중간에 변경 가능한가요?

- '25년 9월 ~ 12월 동안은 2차 시범사업 공모 시 선정 된 병동만 운영 하여야 하며, 참여병동 변경·추가는 '26년 상반기 평가대상기간('26년 1~6월)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변경·추가된 병동은 '26년 1월 1일부터 운영 가능하며 '25년 1~6월 동안 참여병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Q8-5

시범사업 참여병동 중 한 병동을 철회할 수 있나요?

- 일반병동 100% 참여 유예기간(~'26.6.) 동안 참여병동 부분철회가 가능하나
 - 부분 철회 후 참여병동 운영 병상수의 합은 일반병동 운영병상수의 50%이상 및 간호사수 20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1차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은 부분 철회 후 참여병동 2개 이상 및 간호사수 20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일반병동 100% 참여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 일반병동 병상 수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참여병동 부분 철회 가능합니다. (철회 후 일반병동 운영병상 수 100% 참여 유지)
- 부분 철회 시 심평원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철회기관 운영 결과 보고([별지 제 17호 서식]) 및 철회요청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및 환수금액 결정됩니다.

Q8-6

[별지 제 14호 서식]대체간호사 근무일지는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체간호사 근무일지는 작성하여 기관에서 보관해주시면 되고, 제출 요구 시 기한 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보관기한은 시범사업 종료시점까지입니다.